

##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- 1235호

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」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19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를 명확히 하고, 공용부분의 안전관리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며, 하자심사·분쟁조정·분쟁재정 등의 신청과 관련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 명확화(안 제4조제2항)

- 입주자대표회의 이사의 회장 직무 대행 사유를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 췌위, 질병·사고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명확히 함

나. 공동주택단지 내 휴게시설 등의 안전점검 강화(안 제11조제1항)

- 관리주체가 피걸러, 벤치 등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도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고 정기 점검하도록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

다. 방법·안전교육 관련 인용 조문 정비(안 제12조제2항)

-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

라. 「범죄경력 확인 요청서」 서식의 처리기간 현행화(안 별지 제2호서식)

-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「범죄경력 확인 요청서」 서식의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14일 이내로 현행화

마. 하자심사·분쟁조정 관련 신청서류의 보완 및 서식의 정비

- 입주자대표회의등과 사업주체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교섭경위서 제출대상을 감리자·수급인·하수급인 등 모든 분쟁 당사자로 확대

(안 제19조제1항, 별지 제15호·제16호·제16호의2서식)

- 사업주체등·설계자·감리자·수급인·하수급인 간 분쟁사건인 경우에 분쟁조정·재정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근거 마련

(안 제19조제2항·제3항, 별지 제16호·제16호의2서식)

- 「하자보수 결과 확인서」, 「하자심사 이의신청 사건 답변서」 서식의 신설(안 제22조제4항, 제25조제2항, 별지 제22호의2·제27호의3서식)

- 주택 인도 증서 및 하자심사·하자분쟁조정·하자분쟁재정 신청서 서식의 정비(안 별지 제12호·제15호·제16호·제16호의2서식)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을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주택건설공급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 → “정책자료 → 법령정보 → 입법예고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: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

- 일반우편 : 우편번호 30103,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 
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
- 전화 : 044-201-3374, 3375, 3376, 4897
- 팩스 : 044-201-5684

### 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끝.